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11 선고 2023가단8978 판결 [선급금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남보

피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변론 종결2024. 11. 20.

판결 선고2024. 12. 11.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9.부터,

1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각 2024.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기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알미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23. 1. 9. 90,000,000원, 2023. 1. 10. 14,500,000원 등 합계
1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은 2023. 11.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잔액확인서

당사는 귀사에게 거래를 하고 2023. 11. 23. 현재 일금 일억사백오십만원정(₩104,500,000)의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위 채무자: 인

연대보증인: D (서명)

(주민등록번호 1 생략)

C 대리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형제작 등을 의뢰하면서 선금금 1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금형을 제공한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형제작 등 계약을 해제한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형제작 등 계약은 2024. 2.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연대채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들은 E을 동업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피고들이 동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바, 피고 D에게 E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고, 피고 D이 E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와 영업에 관한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 C는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는 피고 D이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면서 C의 대리인으로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C는 원고와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2) 피고 D은 원고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10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D이 원고의 요청대로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간을 지연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청을 하다가 1년이 지나 갑자기 지급한 돈 전부를 반환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없었고,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가 갑자기 변심하여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피고 D은 당황하여 자신이 일한 부분이 있어 30%는 반환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합의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산내용이 없으므로 계약해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형제작 등을 위하여 피고 D와 만나거나 연락을 한 후 선급금을 입금하였고, 피고 C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원고는 선급금 지급 이후에도 금형제작 등을 위하여 피고 D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였을 뿐인 점, ③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피고 C 계좌로 선급금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피고 C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과 사이의 금형제작 등의 계약은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구두상 이루어진 것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형제작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 D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가 승인하면 그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보인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청대로 금형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피고의 잘못,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형제작 비용으로 5,000,000원 내지 6,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은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이후인 2023. 11. 23. 선급금 전액에 대한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피고 D과 원고 사이의 2024. 2. 21.경 전화통화 내용, 그 무렵의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피고 D이 원고에게 선급금을 돌려줄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피고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금형제작 비용으로 돈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선급금 전체 금액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 D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원고도 그에 상응하는 피해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D은 2024. 2.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D이 원고에게 선급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선급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채무를 '피고 D의 반환채무'라고 한다, 원고는 선급금을 지급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합의해제에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라. 피고 C의 연대채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동업으로 E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가 피고 D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그러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피고 C의 사업자등록증,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를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영업주라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잔액확인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가 상법 제57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피고 D의 반환채무에 대한 피고 C의 연대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현